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용·소비신고 위반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58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용·소비신고 위반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3
2. 부칙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9.
3. 회부연월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에 대한 사용·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내려진 조난물품에 대해 운송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세관장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의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사용·소비신고 위반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개정안은 반입물품 사용·소비 신고 위반, 조난물품 운송승인 또는 신고 위반 및 제한물품 반입·반출에 대한 벌금을 각각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60조제2호의2 삭제 및 제70조제1항 신설, 안 제61조제4호 삭제 및 제7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안 제61조제6호 삭제 및 제70조제2항제4호 신설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2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한 자 3. ~ 6. (생략)	제60조(벌칙) -----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2. (생략)	제61조(벌칙) -----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자	4. ----- ----- 제213조제2항 ----- ----- -----
5. 삭제	
6.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삭제>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 <신설>	제70조(과태료) ①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② ----- ----- -----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한 자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⑥ ----- 제5항까지의 ----- ----- -----제3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 -----.

우선, 반입물품 사용·소비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받는 지역으로서,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때 해당 물품을 관세청에 반입·수입신고 등을 하되, 이에 대한 관세는 부과받지 않고 있으며,

이후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43조¹⁾에 따라 관세를 부과받고, 재료·장비등의 외국물품을 자체적으로 사용·소비하려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29조의2에 따라 사전에 사용·소비신고를 하도록 함.

사용·소비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외국물품을 무단반출하여 조세포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

1) 제43조(「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60조제2호의2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음.

[표 2]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 사용·소비시 사전신고 의무

제29조의2(사용·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유회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그러나 「관세법」에서도 지정보세구역(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세관검사장 등), 특허보세구역(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공장 등) 및 종합보세구역(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지정·특허보세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역) 등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구역²⁾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세공장이나 보세건설장에서 외국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2)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표 3] 「관세법」상 사용전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제277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종합보세구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제186조(사용신고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2025.12.30.)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물품 사용·소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보세구역 내 사용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³⁾ 판단한 바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유사 행위간 제재수준을 정합성있게 조정하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부담이

3)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2025. 12. 30.)

○ (현황) 자유무역지역에 해외에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경우 벌금 최대 2천만원 부과

* 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인 L 물류회사가 해외에서 반입한 지게차를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자사 물류센터 내에서 사용한 경우

⇒ **관세법*에서 사용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 제재 부과가 필요**

*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1호(사용신고의무 위반) → 과태료 1천만원

○ (개선내용) (現)벌금 최대2천만원 → (改)과태료 최대 2천만원
 (법제처 기준에 따라 벌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전환)

나 현장 애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관세청은 반입물품 사용·소비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이는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 없이 임의로 외국물품을 처분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⁴⁾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⁵⁾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에는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수출·수입·반송신고) 또는 제244조제1항(※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5) 관세청은 관세법상 사용신고 및 사용전 수입신고 효과는 ‘과세보류’이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각각 후속단계(제품 수입단계 또는 건설완료 후 가동단계)에서 과세가능하므로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으나, 동 법률에 따른 사용신고 효과는 ‘면세효과’이므로 해당 신고 위반은 즉시 수입신고 위반, 즉 밀수출입죄와 같으므로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 반면, 산업통상부는 동 법률에 따른 사용신고 역시 ‘과세보류’ 효과이며, 관세보류 상태에서 관할 세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는 절차라는 설명임.

-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통한 산출물은 해외수출 시 국외반출신고를, 국내(관세영역)로 반출 시 수입신고(관세 등 납부)를 해야 함
- 따라서 자유무역지역법상 사용소비신고는 과세보류 효과이며 국내(관세영역)로 반출 시 수입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후속단계(국내 반출 시)에서 과세 가능하므로 관세법과 동일하게 과태료 처벌함이 타당함.

- 다만, 산업통상부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는 기계·설비, 소모성 자재·장비의 경우 관세 면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봄.

- 이에 대해 해당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할 때 반입신고 해야하고 재고 관리 의무도 있어 만약 사용·소비 신고가 누락되더라도 화물관리 체계 내에서 추적·관리 가능하다는 설명임.

다음으로, 조난물품 운송승인 또는 신고 위반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36조제2항은 자유무역지역간 운송시에는 「관세법」 제1절(보세운송)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⁶⁾,

현행법 제61조제4호에 따르면 준용규정 중 「관세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은 동법 제219조제2항에 따른 조난물품운송 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표 4] 「관세법」상 조난물품 운송승인 규정

「관세법」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213조제1항 각
--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보세운송) ① 외국물품등은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4조부터 제2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호의 장소로 운송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제2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277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관세법」 상으로는 조난물품 운송 승인 또는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 법률은 준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조난물품 운송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무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률에 따라 형사형벌을 받거나 행정질서벌로 각각 다른 제재를 받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유사한 의무위반 행위간 제재수준 정합성 및 처벌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준용규정(「관세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과도한 형벌 적용을 완화하고 제재처분을 합리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⁷⁾.

마지막으로, 제한물품 반입·반출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1조제2항은 세관장이 총기·마약류 등의 금지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현행법 제61조제6호는 반입·반출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표 5] 자유무역지역 반입·반출 제한물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물품의 반입·반출의 금지 등) ② 세관장은 <u>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u>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의 반입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반출 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u>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u> 2. <u>총기 등 불법무기류</u> 3. <u>마약류</u> 4. 「<u>상표법</u>」에 따른 <u>상표권</u> 또는 「<u>저작권법</u>」에 따른 <u>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u>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그런데 「관세법」에서도 세관장이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물품의 종합보세구역 내 반입·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근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수준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함.

7) 참고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2025.12.30.)에서도 과태료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된 바 있음.

8)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표 6] 종합보세구역 반입·반출 제한물품

「관세법」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u>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u> 제27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과한다. 다만, <u>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과한다. 2. <u>제200조제3항</u>,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에 개정안은 개정된 「관세법」과 같이 자유무역지역 내 금지된 물품 반입·반출 위반에 대하여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되, 금전적 제재 수준을 상향(1천만원→2천만원, (과실시) 200만원→400만원))함으로써 제재방식을 합리화하려는 내용⁹⁾임.

유사한 의무위반 행위간 제재유형 및 수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세법」상 과태료 상한이 5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동 법률의 과태료 상한 역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참고로 「1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2025.9.30.)에서도 동 규정에 대한 과태료 전환 및 과실범에 대한 감경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된 바 있음.

2. 부칙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 전환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입주기업체들이 법령 정비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6개월 이후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그리고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시법주의를 따르지만, 형벌과 제재처분은 행위시법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해당 부칙은 이를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표 7] 개정안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0조제2호의2 및 제61조제4호·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 의 처

02)6788-5456